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12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 재정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고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 관리비용증가 요인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도모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테니스장의 사용시간을 4시간 단위에서 1시간 단위로 조정함.

(안 제7조 제1항 제2호)

나. 시설사용료를 별표와 같이 상향 조정함.(안 별표 시설사용료)

다. 시설사용료와는 별도로 냉·난방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자가 냉·난방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부과함.(안 별표 시설사용료)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01월 9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회의의장(참조 :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4,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시설(강당, 강의실, 어학실)”을 “교육시설(강당, 강의실)”로, “잔디구장”을 “운동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설의 사용료 기준은 1일 또는 4시간 단위로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를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로 한다.

제7조제1항 2호 중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체육시설 사용시간 : 08:00~17:00”로 하고,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 설 사 용 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시설구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생 활 관	1인실	1인1박	60,000	※ 난방사용료 별도
	3,4인실		15,000	
강 당	-	4시간	70,000	※ 냉 · 난방사용료 별도
강 의 실	50석이상	4시간	30,000	※ 냉 · 난방사용료 별도
	50석미만		20,000	
운 동 장	-	1일	200,000	1면 6,400m ²
		4시간	100,000	
테니스장	-	1면1시간	5,000	2면
체 육 관	-	1일	120,000	1동 2,760m ²
		4시간	60,000	

※ 사용료 계산

- 사용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
- 사용시간 초과시 매1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사용료의 25% 가산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체육시설의 경우 오전 사용자가 13:00를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1일 사용기준에 의한 사용료로 계산한다.
- 체육시설 사용시간
1일 : 08:00~17:00
4시간 :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단, 테니스장은 08:00~17:00 중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 냉 · 난방사용료 : 에너지사용량 × 요금단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시설”이라 함은 생활관, <u>교육시설(강당, 강의실, 어학실), 체육시설(체육관, 잔디구장, 테니스장)</u> 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 ----- <u>교육시설(강당, 강의실)-</u>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조 (사용료) ① <u>시설의 사용료 기준은 1일 또는 4시간 단위로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u> 다만 생활관과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7조 (사용료) ① <u>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u> ----- ----- ----- -----.
1. (생 략)	1. (생 략)
2. <u>체육시설 사용시간</u>	2. <u>체육시설 사용시간 : 08:00~17:00</u> <u>(삭 제)</u> <u>(삭 제)</u>
가. 1 일 : 08:00~17:00	
나. 4시간 : 오전 08:00~12:00 오후 13:00~17:0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 제23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사안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 성 자

-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등 심의 3.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4.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5.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6.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7.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